

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.

1. 대상 투자신탁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6377

2. 주요 변경 내용 :

- 투자신탁 명칭 변경(하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→ 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)
- 주식형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도균→박대업)
- 재무제표(반기)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 시행일 : 2024년 05월 08일

4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경된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(www.hi-asset.com)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칭	<u>하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	<u>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하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"으로 한다.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"으로 한다.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하이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
부칙	신설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05월 08일 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 명칭	펀드 명칭 변경	<u>하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자투자 신탁1호(채권혼합)</u>	<u>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
주식형 모펀드 명칭	주식형 모펀드 명칭 변경	<u>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	<u>하이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아니하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같음)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 수익률)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<u>권도균</u>	<u>박대업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반영									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			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신설	투자신탁 명칭 변경(하이 퇴직연금 코 리아40 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 → 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) 주식형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권도균→박대 업) 재무제표(반기)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						
5.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	책임운용전 문인력 변 경	권도균	박대업							
6.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	펀드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자 펀드 추가	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 (주식) 추가	하이 ALL NEW 장수기업 증권자투자 신탁1호(주식) 하이 ALL NEW 장수기업 증권자투자 신탁2호(주식)							
10. 집합투 자기구의 투 자위험	예금보험관 계 표시 및 설명·확인 에 관한 규 정 개정사 항 반영	(생략)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보험공 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</u>	(현행과 같음)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 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 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 다.</u>	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 준가격 적용 기준	기업공시서 식 작성기 준 개정사 항 반영	나. 환매 신설	나. 환매 <u>10)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 과 여부</u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rowspan="2">환매가 능여부</td> <td>중도환 매 불가</td> <td>중도환 매시 비 용발생</td> <td>중도환 매 허용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-</td> <td>○</td> </tr> </table>	환매가 능여부	중도환 매 불가	중도환 매시 비 용발생	중도환 매 허용	-	-	○
환매가 능여부	중도환 매 불가	중도환 매시 비 용발생	중도환 매 허용							
	-	-	○							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	재무제표(반 기) 확정 에 따른 내용	-	재무제표(반기)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							

매현황	갱신		
3.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 실적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 른 내용 갱 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 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 른 내용 갱 신	-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: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3. 기타 집 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관계사 주 소 등 변경 사항 반영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) 회사의 개요 회사명 : 한국자산평가(주)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 빌딩 4층 홈페이지 주소 : www.koreabp.com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) 회사의 개요 회사명 : 한국자산평가(주)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 빌딩 11층 홈페이지 주소 : www.koreaap.com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구분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 명칭	펀드 명칭 변경	<u>하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	<u>하이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</u>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같음)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	<u>권도균</u>	<u>박대업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